

의안번호	2219463
의 퇴 인	서미화의원
회 답 일	2026.8.20.
추계번호	26C3007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의2 (시각·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)	○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·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.(제3항 신설) ○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4항) ○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식품위생법」 제 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5항 신설) 1. 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2. 제3항에 따른 교육·홍보 및 연구개발 업무 3. 제4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업무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의2 (시각·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교육·홍보 및 연구개발(안 제4조의2제3항 신설)

-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각·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, 관련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행법 제4조의2에서는 식품을 제조·가공·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시각·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표시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당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식품의 점자 등 표시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 관련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, 식품 영업자가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「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음

[표 1] 식품 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내용	2026년 예산
점자코드 등 표시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연구	식품안전정보원에서 '식품의 점자 등 표시 적용 사례 조사' 연구사업을 수행 중임	100
식품의 점자 등 실무협의회 운영	2021년 11월 식약처, 장애인단체, 소비자단체, 학계, 협회, 업계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총 10회 운영되었음	20

자료: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다만, 개정안은 교육·홍보 및 연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, 대상, 수행방식 및 사업규모 등을 정하지 않고 있고, 현행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와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 일부 시행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현행 사업과 구분하여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기술적·재정적 지원(안 제4조의2제4항)

- 개정안은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으로, 이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런데 개정안의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비용은 지원대상, 지원항목, 지원방식 및 지원단가 등 사업내용이 구체화 된 후 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시점에 지원규모와 방식, 지원단가가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식품안전정보원 업무위탁 비용 지원(안 제4조의2제5항 신설)

-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각·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마련, 교육·홍보 및 연구개발, 기술적 지원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므로 업무를 위탁하고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현재 식품안전정보원은 ‘식품의 점자 등 표시 적용 사례 조사’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위탁대상으로 규정한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한 사업이 일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위탁대상 업무별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내용, 지원 규모 등이 불확정적이고, 교육·홍보 및 연구개발, 기술적 지원 업무의 일부는 현행 사업과 중복되는 범위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정안 시행에 따른 위탁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